

자연보존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제10호 1975. 11.

韓國自然保存協會 發行



【論 說】

環 境 教 育

崔 基 哲

人類가 棲息하고 있는 自然環境을 人類의 生存을 許容할 수 없을 만큼 人間이 破壞하고 變質시키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 것은 比較的 最近이다. 人間의 이런 行爲를 教育의 힘으로 未然에 防止해보자는 것이 環境教育의 立場이다.

學校環境, 學習環境, 衛生環境 等を 淨化하고 改善하여야 한다는 것은 今世紀初부터 많은 教育者들에 의하여 主張되었지만 그것은 오늘의 環境教育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環境教育의 擘은 스웨덴의 UN代表가 1968年 7月 30日, 環境에 關한 國際會議을 開催할 것을 UN에 提議한데서 찾는 것이 穩當하다고 본다. 이 提議는 같은 해, 12月에 UN總會를 通過했다. 그 結果, 72年 6月 5~16日에는 Stockholm에서 UN環境會議가 開催되어 世上을 떠들석 하게 한 이른바 環境宣言이라는 것을 했다.

한편 1970年에 開催된 16次 UNESCO 總會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決議를 했다. 「生物圈內의 自然資源은 合理的으로 利用되고 保存되어야 하며,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은 地球的 次元에서 國際的 協助로 究明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教育과 文化가 擔當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環境教育이 登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M. J. Brennan은 1970年에 “이제 全然 새로운 하나의 教育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環境教育이다.”라고 했으며, 이런 事情은 72年에 Britanica年鑑 “科學과 그 將來”가 처음으로 環境教育이란 項目을 掲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UN總會의 決議에 따라서 誕生한 人間과 生物圈(MAB) 國際調整審議會(ICC)는 71年 11月 9~19日에 파리에서 第一次 會合을 갖었다. 여기에서 人間과 生物圈(MAB) 計劃의 基本方針이 樹立되었으며, 教育·訓練 및 情報交換에 關한 方針도 設다. 이 會合에서는 環境教育에 關한 限, MAB計劃의 能力範圍를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各國의 MAB國家委員會內에 教育分科委員會를 따로 둘 것을 비롯하여 15個項을 各國에 勸獎하기로 하고 이것을 專門家 會議로 넘기기로 했다. 專門家會議는 72年 11月 5~8日에 파리에서 開催되어 環境教育의 內容을 規定해서 이것을 73年 4月 10~19日에 開催되는 ICC 第2次 會議에 報告하기로 했다.

이런 情勢下에서 우리 나라는 長官級을 主席으로 하는 代表團을 UN環境會議에 參席하게 했고, 72年 9月 28~30日에는 環境問題研究協議會를 釜山에서 가졌다. 이 會合에서 洪雄善教授는 “環境教育의 基本方向”이라는 主題 講演을 했다. 이에 대한 協議會도 가졌다.

筆者는 여기에서 環境教育의 目的, 內容 및 方法에 關하여 自身の 見解와 所信을 밝히고자 한다.

目 的

環境教育은 첫째 地球生態系의 構造와 機能을 밝히므로써 人間의 棲息環境의 本質을 理解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自然環境과 人爲的인 環境을 區分하게 하고, 相互作用을 理解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셋째, 自然을 破壞하고 變質시키고 汚染시키는 人間 活動을 分析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人類를 自滅의 길로 誘導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行動을 하는 것은 經濟的 利潤 追求에서 오는 것이고 慾望과 利己主義的인 思想에서 오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넷째, 人間이 自滅의 災禍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가졌던 그릇된 價値觀, 人生觀 내지 生活哲學을 바꾸어야 하고 그것을 行動에 옮김으로써 自然資源을 合理的으로 利用하고 管理하도록 하며, 自然을 保護함에 있어서 앞장서게 하여야 한다.

이런 教育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 內容은 스스로 定해진다.

內 容

1. 生態系의 構造와 機能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째, 生態系는 無生物과 生物로 構成되어 있고, 生物에는 生産者, 消費者 및 分解者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들의 相互關係를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들은 恒常性에 의하여 平衡狀態가 維持되고 있다는 것을 理解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人間도 生態系內의 一員임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는 生態系內에서 에너지가 어떤 順序로

어떻게 흐르는가를 밝혀야 하고

넷째는 生態系內에서의 物質이 어떤 順序로 어떻게 循環하는지를 把握시켜야 한다.

이런 內容은 科學分野의 教科, 特別히 生物學과 地學 및 化學이 擔當할 수 있을 것이다.

2. 自然環境과 人爲的인 環境을 區分하고 兩者의 相互作用을 究明하려면

첫째, 人間活動의 產物인 農耕, 造林, 牧畜, 鑛山開發, 工業發展, 建築, 道路工事, 家庭汚物處理, 댐과 堤防 築造, 野生動植物의 濫獲과 濫伐, 交通機關, 燃料 燃燒 등이 自然生態系를 어떻게 變貌시키고 變質시키는지를 理解시켜야 한다.

둘째, 人類는 그런 人間活動의 結果, 自然環境으로부터 어떤 報酬나 報復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해야 한다. 이런 內容은 科學 以外의 社會科學系統의 여러 教科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3. 文化를 發展시키고 經濟를 成長시키려는 人間活動의 一部가 오히려 人類의 自滅을 促進시키는 行爲라는 것을 理解했다면 마땅히 그 原因을 究明해서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近代 工業의 發展을 例로 들어보자. 그것은 經濟的인 利潤을 追求하는 人間活動의 一面인 同時에 國家나 社會을 發展시키는 一面이기도 하다고 널리 認定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그런 利潤追求의 結果가 窮極的으로 人類에 害毒을 끼치는 것이라면 이는 그대로 放置할 수 없다.

이 境遇에 工業發展에 參與하고 있는 當事者들은 公益을 위해서 私利를 버리느냐, 그와는 反對의 方向으로 行動하느냐의 岐路에 서게 된다. 이런 境遇에 國家나 社會가 後者를 許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環境教育에서는 所信을 가지고 前者를 固守해야 한다. 이처럼 人

間이 慾望과 利己主義를 버리고 公益을 위해서 行動한다는 것은 價値觀이나 人生觀 乃至 生活哲學의 確立에서 오는 精神的인 것으로서 教科의 測面에서 본다면 科學의 系統에 屬하는 教科의 領域을 벗어난다. 만일 公益을 위해서 公害을 法으로 防止하는 規制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強制성을 띠게 되므로 이것을 理解시킨다는 것은 科學教科 外的 또 하나의 領域이다.

4. 環境教育이 크게 成果를 올리게 된다면 國民 한사람 한사람이 自身의 自然 및 人爲의 環境의 實態를 옳게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게 되어, 自然資源의 合理的인 利用과 管理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積極的으로 自身들의 自然環境을 守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地球生態系의 污染源이 되는 工業 廢棄物들을 다시 利用하고 再循環시키는 四次産業도 發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自然環境과 人工環境을 統合한 新自然의 創造도 可能하리라고 본다. 이것이 環境教育의 最終目標이다.

環境教育이 上述한 바와 같은 目標와 內容을 갖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教育方法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方 法

1. 環境教育은 國際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본다. 環境教育을 實施함에 있어서 가장 큰 難點은 活用可能한 Data의 貧困이다. 環境容量이나 自然의 包容力에 關해서는 人間은 너무나 無知하다. MAB研究計劃은 바로 이와 같은 有用한 Data를 얻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研究 結果는 環境教育에서 活用할 수 있는 教材가 될 것이다. 따라서 MAB 國際調整審議會→專門家會議→國家委員會→研究陣

→Data→教育分科委員會→教育課程反映→環境教育實施의 系統을 세워서 實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效果的인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研究와 教育의 相互作用이 特히 重視되어야 한다.

2. 따라서 環境에 관한 教育課程 編成은 MAB國家委員, 同 教育分科委員, 政策樹立者, 文教部 編修官, 專門學者 및 各級學校代表의 緊密한 提携에 의하여 成就되어야 한다.

3. 環境教育은 MAB研究計劃과 더불어 地域化(Riegnalization)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教育成果나 MAB研究 結果를 交換할 수 있는 까닭에 他國과의 比較가 可能할 뿐 아니라 他國의 長點을 따고, 短點을 補完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이 경우에 先進工業國과 開發途上國 내지 未開發國이 連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情報交換의 機會가 많을수록 效果的인 것이다.

4. 環境教育 方法에 關하여 MAB國家委員, 同教育分科委員, 政策樹立者, 各級學校代表間에 심포지움을 갖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環境教育이 國際性을 띤뿐 아니라 國家施策과 直接的인 關聯을 지워야하는 까닭에 이런 심포지움은 環境教育의 基礎를 굳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Czechoslovakia의 境遇와 같이 環境教育은 初·中·高等學校의 全學年 全科目에서 實施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본다. 이것을 하나의 獨立된 教科目으로 統合한다는 것은 無理할뿐 아니라, 中高等學校의 境遇는 이 教科를 擔當할 수 있는 教師를 따로 養成하여야 하는 難點이 있다. 다만 全教科目을 통해서 教育하는 경우, 各教科의 特色과 領域을 充分히 살리면서 教科目間의 聯關關係를 十分留意해서 綜合的인 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境遇에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에 關聯된 여러 教科가 核心이 되어 地球生態系를 理解하고 人類繁榮을 持續할 수 있는 새로운 自然을 創造하는데 熱意를 가지고 行動하는 人間을 養成한다는데 歸結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環境教育은 上述한 바와 같은 教育 目標와 內容을 갖는 것이므로 이른바 汚染防止를 爲한 教育, 또는 公害教育에 그쳐서는 안된다. 環境教育이 豫防療法에 비유할 수 있다면 公害教育은 對應療法에 比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當황해서 끌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環境教育의 立場이다.

7. 上述한 內容은 初·中·高等學校에서의 教育을 對象으로 생각하고 論述했지만 環境教育은 그 性格으로 보아 MAB研究에 參與할 研究陣을 養成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訓練, 또는 一般國民에 대한 啓蒙事業과 깊이 關聯을 지우는 것이 效果的인 것이다. 前者에서는 環境教育의 教材를 分讓받을 수 있을 것이고, 後者를 통해서는 環境教育의 成果를 地域社會에 土着化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8. 環境을 理解하고 그것을 保護하는 일은 아버지 教室, 鄉土學校, 새마을運動, 言論機關, 公共團體, 民間社會團體 등을 통해서 啓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環境教育의 成果를 올리기 위해서는 全國民이 이에 參與하는 것이 理想인 까닭이다.

9. 自然環境을 保護하고 諸般 汚染을 防止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國家의 次元에서 여러가지 措置가 取해지고 있다. 國立公園·自然保護區域·名勝地·天然記念物·綠地帶 등의 指定 및 保存, 汚染防止法 制定,

人口問題에 대한 家族計劃 實施, 愛林思想鼓吹, 環境問題에 關한 教材 導入, 江原道나 濟州道와 같은 非汚染 行政區域의 指定 등이 바로 그것이다. 環境教育은 이런 우리의 實情을 土臺로 해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效果的인 것이다.

10. MAB國家委員會의 委員長은 研究結果를 整理해서 一般國民이 理解할 수 있도록 啓蒙用 팸플릿을 隨時로 내게 되어 있다. MAB教育分科委員會는 이를 土臺로 하여, 生態學과 人口學을 包含한 項目別 Monograph를 내는 것이 環境教育의 土臺를 構築하고, 成果를 올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結 語

上述한 바와 같이 環境教育은 새로운 自然에 人工을 加한 새로운 生態系를 創造하고 保護해서 人類가 永遠히 繁榮된 生活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實施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環境教育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成長을 阻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의 生産構造의 改革, 企業家の 活動自由의 一部 留保, 一般國民의 價値觀 變革을 包含한 理想的인 環境教育을 實施하려는 우리의 앞에는 許多한 難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이런 難關들은 一朝一夕에 突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人類의 自滅을 冒免한다는 消極的인 立場에서라도 諸般難關을 克服하기 위해서 우리의 꾸준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한다.

우리의 當面한 課題는 全教育者와 全指導級人士가 各各 自身이 處해있는 位置에서 環境教育 實施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深思熟考하여 即刻에 行動을 取하는 일이다. <서울大·師大 敎授>



自然과人生

金 濟 源

「自然은 결코人間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格言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는 옛말이 되어버렸는지, 自然은 到處에서 異狀現象을 나타내며 人間生活을 위협하고 있다. 人間에게 小요되는 온갖 것들을 自然은 것처럼 順하게 供給해 주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그 供給품들이 不良品 투성이라 人間들은 不安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現代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環境公害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마음놓고 밥한그릇, 생선 한토막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생활주변을 살펴보자. 겨울이면 姜太公들이 얼음구멍속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와 함께 세월을 낚던 漢江, 여름엔 水泳을 즐기기도 하고 나룻배가 閑裕롭게 떠노니던 漢江은 서울市民이 가장 接하기 쉬웠던 자연이었다. 그 抒情的이며 또한 生活的이었던 漢江이 강변의 公업단지들로부터 흘러나오는 廢水에 오염이 되어 이제는 江줄기가 사람눈에 뜨일만큼 시커먼 「죽음의 江」이 되어 버렸다. 붕어, 잉어, 장어 등의 민물고기는 커녕 水草마저 살지 못한다는 毒한 漢江물을 農業用水로 퍼올려 김포평야 일대의 벼농사를 짓는다. 거기다가 農藥公害까지 겹쳐서 옛부터 밥맛 좋기로 자랑삼던 京畿米속에는 어느새 水

銀, 카드뮴 등의 重金屬毒性이 스며들어서 「미나마타」病이니 「이따이 이따이」病이니하는 病名조차 괴상스러운, 兇정한 사람을 廢人化하는 新種疾患의 원인이 되고있다 한다.

그뿐만인가 大團位工業團地의 廢水가 바다로 흘러내려 沿岸水産物의 汚染度가 날로 높아간다는 무서운 소식이 자주 들린다. 옛그제의 신문보도에도 仁川灣에서 잡힌 물고기가운데 쳐추가 굵고, 꼬리가 휘고, 몸에 흑이 달린 奇型魚가 백마리당 너댓마리나 잡힌다는 쇼킹한 소식이 실렸었다.

大都市나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排氣가스가 신선한 공기를 어질러놓아 대기오염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간다.

이와같이 自然은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아니 이 지구전체를 公해속에 몰아넣어 오늘날 人間을 公포와 不安에 떨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自然이 人間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그전에 먼저 人間이 自然을 파괴했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業報이리라.

周知하다시피 급속한 경제개발을 志向하다 보니 大量生産과 大量消費로 인한 大量의 廢棄物이 생긴다. 이 汚物찌꺼기들을 감쪽같이 제로(零)상태로 처리하지 못하고 自然속에 도루 내던져버리니 이러한 것들이 또한 自然을 파괴하여 公害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요즘 物議를 빚고있는 「6價크롬공해」는 아무리 그 재를 땅에 묻어버린다고 해도 워낙 毒極性이

라 그 땅은 풀포기조차 자라지 못하는 不毛地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땅위에서 뛰노는 어린이들 가운데서 코피를 쏟는 事例가 많다고하니 可히 戰慄할 노릇이다.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자연보존문제가 반드시 並行되어야한다는 교훈을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요즘은 企業들로 하여금 工場건설과 함께 公害防止시설을 설치할것을 책임지우고 있다. 企業발달과 自然保存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진정한 富가 약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自然保存이라고 해서 나무 한그루, 고기 한마리 손대지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國土開發10개년계획」이니 「治山綠化10개년계획」등을 세워 국가번영에 이용하고 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植樹사업을 통해 나무를 더 심고, 현재 있는 물고기를 잘 크도록 보호함은 물론 內水面개발사업을 통해 더많은 養魚를 目的하고 있다.

전에는 해마다 植木日만 되면 「나무심기」캠페인을 떠들썩하게 벌여서 마치 한해동안 심을 나무를 그날 하루에 모두 심을듯 요란스러웠는데 이제는 「國民植樹기간」을 한달씩 定해서 조용한 가운데 內實을 기하고 있는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든다. 금년에는 3월21일~4월20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5억5백만 그루를 심었다한다. 또한 중전처럼 植樹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土質에 맞고 經濟性있는 樹種開發에서부터 심은 뒤에도 두고두고 잘 가꾸는 育林에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듯 하다.

「五穀이 풍요한 들(野), 樹林이 울창한 산,

물고기가 充滿하게 넘쳐흐르는 江」은 내가 평소 꿈꾸는 理想郷이다.

산새가 사라지고 江고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식은 나를 슬프게 한다. 낚싯꾼의 그물에 걸린 稚魚가 市場바닥으로 팔려 나갈때, 太白山속의 5백년生 巨木이 도벌꾼의 손에 베어졌을 때, 나의 슬픔은 노여움으로 바뀐다.

한번 베어버린 5백년生 나무의 復元은 5백년이 걸린다. 그만큼 일단 파괴된 自然의 복구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江고기가 줄어들다는 소식에 가슴아픈 나머지 나는 해마다 5월이면 數십만마리의 魚類를 昭陽江물 等地에 放流해왔다. 이 放流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人口때문에 물고기도 자연번식만으로 그 수요를 充足시키기 어려운 時代인지라 食糧難해결에 도움을 줄수있다는 현실적인 타산도 있지만, 근본이념은 역시 푸른 강물에 고기가 넘쳐흐르는 나의 理想郷 具現을 위해 한발짝부터 떼어놓자는 執念의 所産이다.

세계경제가 지금과같은 速度로 成長하고 人口가 이대로 불어난다면 100년안에 人間은 파멸되고 만다는 悲觀的인 未來를 예언하고 있는 學者들도 있어서 이제 나무를 심고 물고기를 키우는 일은 人間들의 至上課題가 되었다.

先進林業國家라고 할 수 있는 北歐의 스웨덴, 핀란드 등은 기후가 춥기때문에 나무들의 生育速度가 매우 느리다고 한다. 나무줄기의 굵기가 1尺(30cm)가량 자라는데 平均 1백년이 필요하다니까 그야말로 百年之大計育林이다.

여기서 나무를 심는 뜻을 한번 되새겨보면 ①山沙汰를 방지함으로써 每年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災害예방 ②水源보호—電力에너지의 生産에 간접기여 ③有實樹로써 食糧難해결

에 도움 ④酸素공급원 ⑤原木生産 등등 多目的이다.

또한 물고기를 기르는 일도 ①우수한 단백질 공급으로 식량난해결에 도움 ②內水面개발策으로써 農魚民의 소득증대에 기여 ③쇠퇴해가는 魚族資源의 보호와 情緒生活의 環境造成 등 植樹育林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옛사람들은 自然을 그대로 하나의 詩라고 찬미했다. 그러나 現代의 物質메카니즘은 自然을 그대로 돈으로 만들어 버렸다. 山의 나무가 돈을 타고와서 내집 庭園樹가 되어버리고 바윗덩어리를 다이나마이트로 산산조각내어 庭園石으로 파는 세상이다. 自然保存이란 결코 정부에서 「10개년계획」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국민 각자의 마음속에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내집 庭園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도벌꾼의 손에서 나무를 사들이는 국민이 있는 한 국가적인 全體富는 기약하기가 힘들다. 自然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보호, 정성어린 마음없는 人間이 自然을 파괴하고 배반할때, 저 可憐스러운 環境公害처럼 人間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뿐이다. 漢江에 물고기가 다시 살아 모여 드는날, 서울市民의 生活에도 平和와 富가 함께 깃들 것이다.

祖上時代에 比하면 罪스러운 程度로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들은 더없이 가난하고 매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집 새장이나 어항만을 所重한 觀賞物로 아는 愚와 翁졸에서 大自然에 나무와 새를 그리고 물고기를 기르는 마음의 富者가 되어보자. <國會議員>

(10페이지에서 계속)

그런데 二次大戰後 급속도로 進展한 人間의 技術은 세계적 규모의 産業發展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天然資源의 枯渴과 環境의 汚染은 地球上의 動植物과 人間의 生存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제외될 수 없으며 高度成長의 뒤에 따르는 環境危機狀態의 到來는 必然的인 것이다. 成長率 世界最大, 國民總生産이 自由世界 第二位를 자랑하는 日本이 격심한 汚染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으며 그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時急히 이에 對處하는 教育·各種의 豫防·환경 보호 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

自然保護란 人間과 自然사이의 현명한 共存의 原則을 발견하는 일이며 無批判的인 人間 활동이 現狀態로 持續된다면 人間은 멀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을 졸르는 破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事態의 深刻性을 표현한 「公害에 終止符를 찍는 者는 公害 바로 그 자신이다」라는 뉴욕大學의 바이서教授의 말은 참으로 意味深長하다.

<서울江西中敎務主任, 서울京畿支部會員>

公害란 무엇인가?

鄭 鎬 台

公害라는 말이 社會的인 關心을 가지고 近來 널리 사용되는 社會用語가 되었다. 누구나가 입에 올리는 流行語가 되고 日常生活에는 물론 知識人들의 모임에서도 이 單語를 끼우지 않으면 無識한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公害라는 말의 內容은 극히 애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各各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거의가 “公利”에 반대되는 말로 생각하기 쉽고 公衆에게 害가 되는 일이면 덮어놓고 公害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教育公害, 交通公害, 食品公害, 藥品公害 등이 誌上에 자주 나타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食器公害, 玩具公害, TV公害, 개公害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處理하기 困難한 公衆의 被害라면 그저 公害라는 말을 붙여서 政府나 地方公共團體의 施策貧困을 非難 攻擊할 때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英國, 美國에서 표현되는 生活妨害(nuisance), 프랑스의 近隣妨害(Troubles de Voisinage) 독일의 相隣關係(Immission) 등의 概念이라든가 「nuisance란 加害者가 被害者에게 直接的으로 身體 혹은 財産에 대한 物理的襲撃을 加하는 일이 없더라도 被害者의 權利行事を 방해하여 現實의 不便·不快·不利益을 주고 손해를 加하는 행위」(日本 東京都公害研究所長 戒能通孝)라고 定義한 것은 法律上으로 個人의 生活領域에 대한 外部에서의 權利侵害 혹은 生

活妨害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私人사이의 문제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公害의 概念이 어느 정도 畧이 드러난 것이 常用辭典類에서는 日本의 “廣辭苑”에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住民一般이 産業의 발전 등에 의하여 얻게 되는 모든 被害 即 工場·鑛山 등의 騒音·煤煙·有害가스·惡臭·汚水·廢液 등에 의한 것. 地盤沈下·交通量の 增大에 따른 被害」라고 비교적 具體的으로 된 점은 제법 公害先進國다운 面貌가 엿보인다. 法文上으로는 西獨의 “公害防止法”에서 「大氣汚染·騒音·振動을 말하며 大氣汚染은 煙氣·煤煙·塵埃·가스·蒸氣·惡臭에 의한 大氣의 變化」라 했고 公害關係法에서 公害(大氣·水質의 汚濁, 騒音, 惡臭 등)를 外部에 發散하는 能動的인 현상을 Emission이라 하고 公害가 침입해 오는 受動的인 현상을 Immission이라 구별한 점은 독일인의 思考의 論理的 緻密性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에서는 “公害對策基本法”에 「事業活動 其他의 人間의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相當範圍에 걸친 大氣汚染·水質汚濁(水質 이외의 물의 상태 또는 水底의 底質이 惡化하는 것도 包含)·土壤汚染·騒音·振動·地盤沈下(鑛物採掘을 위한 土地掘鑿은 除外) 및 惡臭로 인해 人間의 건강 또는 생활 環境에 관계있는 被害가 생기는 것」이라고 定義하여 그 被害要因을 상당히 폭넓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公害防止法”에 「公

害란 다음 각目の 경우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危害와 생활 환경을 阻害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㉗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먼지·악취 및 가스 등으로 인한 大氣汚染, 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水質汚染, ㉙ 騒音·振動이라 했다.

1963년에 公布된 舊法에서는 公害對策의 범위를 「국민 건강상의 危害」만으로 局限하였으나 1971년 1월에 公布된 改正法에서는 「생활 환경의 저해」를 아울러 포함시켜 人間環境保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65년 國聯經濟社會理事會는 「환경 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이란 人間の 行爲로 인해 환경의 構成成分이나 狀態가 변화하여 원래 상태보다 인간이 그 환경을 이용하는 데에 좋지 않게 된 경우」라고 定義하여 公害라는 말 대신에 “환경 오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要는 公害現象은 人類의 大發生과 技術의 發達로 인해 人間自身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인간의 日常生活이나 生産活動에서 생기는 현상이 대부분이며 最終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快適한 생활 환경을 빼앗는다. 이는 暴風雨·洪水·地震·地盤沈下 등의 自然災害와는 구별된다.
- ② 個個의 發生源에서 유래하는 汚染등은 비교적 영향이 적으나 發生源의 多種 集結, 汚染物質의 集積으로 인해 그 영향은 複合的으로 重大해진다.
- ③ 單獨業體에서의 汚染은 그 發生源이 뚜렷하지만 工業團地의 경우는 加害者의 數가 많아서 特定하기 어렵고 被害者는 대

부분이 一般住民으로서 그 數가 많다.

- ④ 대체적으로 加害狀態가 계속적이며 大氣·물·土壤 등의 自然을 媒體로하여 直接的인 被害 혹은 食物連鎖過程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人體에 영향을 준다.
- ⑤ 그 영향은 人類뿐만 아니라 動植物과 物의 資産에도 미치며 地域的으로 넓은 범위에 걸친다.
- ⑥ 그 被害의 因果關係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社會全體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近來에 企業活動과 消費生活의 擴大로 인하여 그 被害의 量과 범위가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量의인 增大가 이제 質的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은 환경 전체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 公害라는 말보다 더 넓은 뜻으로 “環境破壞”라는 말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본다.

人間이 발을 디디고 各自의 生命을 依託하고 있는 이 地球는 宇宙空間 속에 떠 있으면서 外界에서 받고 있는 것이라고는 太陽光線과 隕石 정도이고 地球에서 外界로 放出되고 있는 것은 輻射熱과 靑靑 정도이며 이 외는 他天體와의 사이에서 결코 어느 하나 收拂이 있을 수 없는 철저한 自給自足의 閉鎖된 循環系이다. 그리고 또 全地球的인 規模로 된 生態系는 動態的인 均衡系(Homeostasis)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開放된 循環系이기도 하다. 即 개방순환계가 잘 조화된 폐쇄순환계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지구를 飛行中인 宇宙船의 生理에 비유하여 宇宙船 “地球號”라 부르게 되고 (바야바라·와아드) UN人間環境會議에서는 “오직 하나 밖에 없는 地球(Only one Earth)”를 살리자는 표어를 내어 걸게 된 것이다.

(8페이지에 계속)

【資料】

現在의 天然紀念物 135號 烏骨鷄에 對하여

李 徽 載

筆者가 全國의 天然紀念物을 巡覽하고 싶은 意圖가 있어 이것의 實踐으로서 세번째로 135號 天然紀念物인 “烏骨鷄”(東萊郡 機張面 大羅里山 2管理義務者 權世允氏宅의 것)를 巡見하였음에 따라서 이것에 對한 所見을 拙文이나 마 敢히 投稿하고자 한다.



指定된 場所의 135號 烏骨鷄

(一) 管理義務者 權世允氏의 說明의 略記
옛모습 찾는 文化財 烏骨鷄가 天然紀念物로 指定된 48年을 마지하여 指定을 받은 者로서 同志에게 所感을 洩려코저한다. 本人의 四代祖의 遺訓이므로 12歲부터 길러왔다. 日政때 天然紀念物 135號로 指定을 받아 現在에 이르는 것이다. 傳來해온 烏骨鷄는 白色羽毛로 雌는 胸部에 赤黃色의 紋이 있고 雄은 頭上에 高頭瓣尼라는 毛冠과 木苺冠과 턱수염이 있고 나래 風切羽에는 五個의 玉型의 赤色紋이 있고 脚部上關節에는 上北後面에 犀(치)라하는 堅固한 1本の 強羽毛가 있고 行纏을 치고 雌雄共히 肉骨은 紫黑色이며 足脂는 必히 四本이고 나무위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習性이 있었

으나 次次退化되어 雄의 風切羽의 赤玉球와 脚部의 犀(치)는 只今은 볼수 없게 退化되고 말았다.

日政(昭和2年) 8月 10日 命을 받아 北支馬來半島에 出張, 실크種 白10首 黑6首를 求得하여 繁殖에 着手한 結果 羽毛가 綿毛와 같어 飛上을 못하며 體重이 적고 産卵數와 育雛成績이 不良하며 犬猫의 害를 받아 次次 減數하여 種鷄를 確保할 程度

로 大幅減數하였다. 그러던 烏骨鷄의 飼育目的이 奈邊에 있는가 古來로 藥用 또는 強壯劑로 쓴것은 皇室 또는 富豪層에서 우리나라 상감마마라야 울미죽을 먹을까 하는 말과같이 薏苡仁과 烏骨鷄의 湯을 하여 먹은 것이다. 烏鷄가 藥用に 有效하다면 飼育이 容易하고 에너지가 많은 韓國固有의 新羅種을 獎勵할 것이다.

실크는 馬來原産으로 羽毛가 綿毛와 恰似하므로 白細毛 黑色은 黑細毛 褐色은 褐色毛 黃色은 黃細毛라고 하고 慶州産은 新羅種이라고 本人이 命名한 것이다. 叙上 실크는 足脂가 五本 또는 六本脂도 있어 新羅種 四本脂와 區



管理義務者 權世允氏

溪谷 左右에는 울창한 落葉潤葉樹林이 있고 稜線과 頂上部는 소나무가 자란다. 활엽수림 중에는 망개나무가 간혹 나타나며 그중 가장 큰 나무는 天然記念物로 指定 되었었는데 觀光客의 손아귀를 벗어날 길이 없어 自然壽命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代置木을 선정한 것은 같은 災禍를 받을가 두려워 간판조차 세우지 못하고 뜻있는 사람만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울창한 숲속과 그 밑을 흘러 내리는 시냇가에는 많은 식물의 종류가 자라고 있지만 속리산의 特産種으로서는 속리싸리, 속리기린초등이 있고 가지 없는 짙레, 쇠싸리, 눈개비자 및 이미 설명한 종류등을 無視할 수 없다. 속리

싸리는 이미 筆者가 털조록싸리, 그리고 눈개비자는 개비자나무 암나무의 生態形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앞으로의 研究資源으로서 또는 지난 날의 追跡을 위하여 保存 되어야할 資源에 속한다.

俗離山을 찾아드는 손님들 중에는 속리산의 옛 모습을 그리면서 오는 이도 섞여있다. 이것이 事實이라고 인정된다면 時代의 변천과 더불어 環境美化에 動員되는 植物資源은 속리산의 植生이나 歷史的인 背景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觀光誘致面으로 볼때에도 効率的인 것이다.

<서울大 農大 教授>

(15페이지에서 계속)

리는 「셋, 셋」 하며 솔잎이 바람 끊는 소리를 낸다. 습기찬 새벽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들리는 이 소리에 여기저기 장끼들은 아연 긴장한다. 목을 쳐들고 귀깃을 세워 방향을 잡아 「꺼꺼경」하는 특유의 경쾌한 울음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가로질러 날아든다. 모여든 장끼들이 까투리앞에서 숙명의 일전을 겨루는것은 一夫多妻制의 産物들과 마찬가지로. 으뜸이된 장끼는 신부의 앞이나 옆으로 접근하여 얼굴의 性皮를 한껏 불히고 죽지를 밑으로 늘어뜨려 땅바닥을 끌듯 좌우로 맴돌아 誇示를하여 환심을 산다음 교미를 한다. 수태한 까투리는 땅바닥을 접시모양 파헤치고 풀을 깔아 알자리를 본다음 4~6월에 6~18개의 알을 낳아 22~27일간 품어 병아리를 깨운다. 地上에 까투리

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서 장끼와 판이하게 우중충한 색깔을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알을 품고있는 까투리는 주위환경에 녹아든듯 감쪽같은 보호색 구실을 하는 것이다. 부화된 병아리는 수시간후 털이 마르자마자 풀숲밑을 방울이 구르는것처럼 약삭빠르게 기어다니며 어미가 헤쳐놓은 땅벌레를 주워먹는다. 역시 외적을 피하는 본능으로서 이른바 早熟性 또는 離巢性的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병아리들은 어미를 중심으로 일정한 행동반경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어미의 위급을 알리는 경계신호 한마디면 쏜살같이 품안에 숨어들고 새끼품은 어미는 매에 뜯겨 명맥을 끊기면서도 골짜기 병아리를 지키는 비장한 모성애를 보이는 것이다.

<昌慶苑 獸醫官>

우리나라의 動物資源

평

吳 昌 泳

평은 우리나라의 대표급 텃새로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너무나 친근하고 정다운새다. 전신이 불그무레 화려한 밤색에 몸매가 푸짐한 장끼의 모습은 그저 탐스럽기만한데 가까이 살펴보면 볼수록 깃마다 날날이 아로새겨진 오색의 문채들이 마치 이름높은 畫工이 있는 솜씨를 다하여 그리고 다듬은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하기 이를데없다.

구슬같이 영롱한 눈을 감싸듯 온통 붉디 붉은 얼굴의 性皮며 부리에서 정수리로 날카롭게 그어진 두갈래의 흰눈썹線끝에 뿔처럼 세워진 암록색 귀깃(耳飾羽)은 장끼의 심벌이다. 머리의 암록색은 목까지 일으러 선명한 白輪을 경계로 누르스름한 등, 붉은앞가슴, 금빛도는 오렌지색의 겨드랑이, 보다 황금색질은 옆구리, 청동색 허리, 여기에 점점이 박힌 빨강고 검푸른 반점, 배는 검고, 곧고 긴 포도빛 꼬리에는 또렷한 암갈색의 가로무늬가 끝까지 채색돼 있다.

이들 복잡한 배색은 전체적으로는 명확한 한계가없이 광선을 받기에따라 瑞氣어리는 금속성 광택의 갖가지 색깔로 무쌍한 변화를 보인다. 장끼의 화려한 색채에 비하여 까투리는 일견 별종으로 오인하리만큼 검무늬가 얼룩진 우중충한 갈색이다. 평은 학술상으로 남부의평과 북부의 북평등 2개亞種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분포한계가 명확치않고 모양도 비슷하

여 일반적으로는 同一種視 해버리는 경향이다. 대저 한타평 種類라하면 여기에도 분류학상 近緣인 50종이 포함되는데 어느 것이나 수컷이 아름다운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금계와 은계는 특히 아름답다는 평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은 금은계를 능가하는 전장 80~90cm의 우수한 체위와 다양한 채색등 보다 좋은 특징이 있어 일찌기 일본은 물론 歐美各國과 大洋洲섬나라에까지도 移入養殖되어 觀賞용으로 또는 사냥새로 환영을 받고 있다.

평은 주로 地上생활을 한다. 때문에 발가락과 발톱이 튼실하여 땅을 파헤치고 땅 벌레를 찾아먹기 좋아하며 식물의씨 풀뿌리도 먹는 잡식조류다. 「기는만큼 날을 수 있다면 죽지는 않을 것을!」 이는 평이 자신의 宿命을 한탄하는 말이지만 우겨진 숲사이로 치달아 내뱉는 평의 발걸음은 기가막히게 민첩하다. 몸에 비하여 빈약한 날개로는 멀리 날을 수 없고 대신 잼싸게 움직여야 무거운 몸을 띄울수 있기 때문에 날개짓은 뿌두둥소리가 날 정도로 매우 기운차다. 잔솔숲에 숨어 사람이 접근해도 좀처럼 날으려들지않는 습성이지만 버티다 할수없으면 갑자기 발치에서 날기때문에 오히려 이편이 놀랄 지경이다.

평은 一夫多妻制로써 그들의 求愛행동은 다양하고도 재미있다. 이른봄 새벽 발정난 까투

(14페이지에 계속)

댕강나무(孟山六條木)의 南限地

李 一 球

댕강나무의 學名은 *Abelia mosanensis* Chung ex Nakai로 되어있는데 種名이 *mosanensis*로 되어 있듯이 故鄭台鉉博士와 中井氏에 의해서 發見된 產地 平安南道孟山郡의 孟山을 日語發音으로 해서 命名되었다.

現在 南韓에는 鄭台鉉博士의 配慮로 이 댕강나무의 한 포기가 서울 洪陵에 있는 林業試驗場에 심어져있다. 昨年(1974) 5月이라고 記



댕강나무의 꽃과 열매

憶한다. 平南 孟山郡出身의 越南民들이 林業試驗場에 모여서 全國에서 自己네들의 故鄉에 産한다는 이 댕강나무를 鄉愁에 찬 얼굴表情으로 부둥켜안고 기뻐들 하는 모습을 어떤 新聞에서 본바 있다.

實은 이 댕강나무가 孟山郡의 이웃郡인 陽德郡의 雙龍面에도 많이 自生하고 있는데 이곳은 筆者의 故鄉으로서 沸流江(大同江上流)川邊(標高 500m)一帶에 數多하게 分布되어 있어서

筆者에게는 極히 눈에 익은 植物인 것이다. 그런데 1967年 美國의 스미스소니온研究所의 支援으로 우리나라 非武裝地帶(DMZ)의 植物生態를 調査할 무렵 京畿道 加平郡內의 東北端에 位置하는 華岳山(1968m)에 登攀한바 있다. 그 때에 바쁜 日程에 물려서 忽忽히 山頂植物을 一瞥하던 참이었는데 눈썹백나무 물박달나무 가문비나무 칠죽 털진달래 청피불나무등과 함께 있는 댕강나무를 한포기 發見한 것이 었다. 때가 5月下旬인지라 淡紅色 筒狀 鍾形의 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當時 主로 休戰線近傍의 소나무分布의 變遷을 調査中이던 筆者는 댕강나무의 存在만을 認定하였을 뿐이었으나 今年(1975年) 8月에 再登攀을 하게 되어 頂上에 가까운 1400m地點의 南北兩側에서 많은 叢生株를 發見하였기에 댕강나무의 南限地는 華岳山이라고 于先 報告하는 바이다.

自生地의 土質에 의해서 多少 差異는 있겠지만 줄기의 굵기는 大體로 1cm 內外이고 줄기에 溝狀의 줄기가 있고 개나리나무와 같이 圓줄기의 地面에서 分枝가 많이 나와서 叢生을 이룬다. 5월에 되는 나팔모양의 小形꽃은 枝端에 다북이 피는데 그의 香氣란 高貴하고도 그윽하고 훌륭한 造景用植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果實의 끝에 있는 宿萼片(꽃받침)이 枝瑞의 잎새와 함께 보이기 때문에 4~5m 距離에서도 類似한 피불나무등의 他灌木과 곧 識別이 된다. 이번의 登攀에 協助해준 襄炳浩 黃敬洙兩君에게 感謝를 드린다.

〈建國大 文理大學長〉

【資料】

「禁松作契節目」 解題

鄭 英 昊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史料로써 英·正祖人 安鼎福(1712~1791)의 「臨官政要」에 收錄되어 있는 禁松作契節目을 解説 한다.

금송작계절목(禁松作契節目)이란 “소나무와 소나무숲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자르거나 가지를 꺾는 일을 禁止하는 國法을 지키게 하는 協同組合의 規定 및 自律規制守則案”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古來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의 숲(松林)을 東·南·西의 海岸에 育成하여서 성가시게 掠奪을 일삼는 倭寇들의 侵入을 막는 海岸防禦를 위한 自然의 防柵으로써 크게는 國防의 구실을 하였으며 소나무(松樹)는 키워서 恒時 계속되고 있는 宮殿의 營造를 비롯한 韓式建築의 建材로써 不可缺의 存在이었으므로 國利民福과 利用厚生을 위해 國家的次元에서 國法에 의하여 嚴重하고 또한 所重하게 保護育成되었던 것이다.

禁松의 法令은 소나무를 건드리지 않으므로써 소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養松에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禁松하므로써 養松을 하려는 統治者의 本來의 意圖는 좋았으나 이 法을 管掌하는 것은 爲政者이기때문에 中央官署에서 責任者를 選定發令하여서 禁松法令을 施行하는데 있어서는 赴任된 守令들이 그 法을 濫用하거나 혹은 惡用을 해서 百姓을 괴롭히고 또는 억울하게 하는 事例 즉 民弊가 적지

않았다.

「臨官政要」의 刑法章에도

嘗觀一人爲守, 素無禁令, 猝然使將校, 手持松禁傳令, 周行閭里, 無不犯禁, 富者賄免, 貧者被罪, 十家之村, 九家搔擾, 是何景像.

今則官家禁令, 徒爲吏任輩, 納賄之資, 當詳察而行之.

(어느 한 사람이 수령이 되었는데 그는 원래 금령(禁令)을 밝히는 일이 없더니 갑자기 장교(將校)들을 풀어 송금(松禁) 전령을 손에 쥐고 마을을 두루 뒤지게 하였다. 이때 금령을 범하지 않은 백성이 거의 없었는데 부자(富者)는 뇌물으로써 죄를 면하나 빈자(貧者)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받는등 열에 아홉집은 소요(搔擾)하게 되었으니 이 무슨 꼴인가.

요즘은 관가의 금령이 한갓 이임(吏任)들의 뇌물 받는 밑천이 되고 있다. 마땅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어 英·正祖무렵의 自然保存法令의 施行實態의 一側面을 엿볼 수 있다.

「禁松作契節目」은 上述한바와 같은 時代的인 狀況속에서 官吏들에 의한 收奪에서 逸脫하려는 智慧로써 백성들이 먼저 契를 結成하여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自律的으로 소나무와 소나무숲을 지켜서 키우려는 슬기에서 생

긴 것이다.

「禁松作契節目」은 아래에 譯出하는 바와 같이 總 23個節目(23個條)으로 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目的, 綱領, 組織, 任員, 任務, 守則(禁松對象, 禁松方法, 處罰規則, 交替引繼등) 및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금송작계절목(禁松作契節目)

一. 열읍(列邑)이 모두 금송해야 한다는 법령을 국가가 거듭 밝히고 자주 경계시킴 일어난 두번이 아니었으므로 본현(本縣)의 대소민인(大小民人)들은 생각컨대 반드시 금송의 법령이 엄격하다는 것쯤은 깨달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 대한 절목(節目)을 반포하는 일이 없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백성중에는 법에 어둡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간활한 아전중에는 금법(禁法)을 이용하여 간계(奸計)를 꾸미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절목을 조별(條別)로 반포하여 대소민(大小民)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一. 모든 금령은 느슨하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데에서 폐단이 따라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양송(養松)에 대한 정사(政事)는 곧 이용후생(利用厚生)에 관한 하나의 중대한 정사이니다. 그러나 관에서 만약 엄금하려 한다면 반드시 적간(摘奸)을 행해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야 도벌(盜伐)에 대한 유무를 알 수 있으며 적간이 있게 되면 소란을 피울 염려가 반드시 있는 것이므로 각동(洞)으로 하여금 경계(境界)를 분정(分定)하고 금송계(禁松契)를 결성하게 하여 각각의 동으로 하여금 각자가 금양(禁養)에 노력하도록 아니 할 수

없게 한다.

一. 각 리(里)·동에서 사리에 밝은 사람 2명을 선출하여 도유사(都有司)로 정하되 주년(周年)이면 교체(交遞)하고 가호(家戶)의 좌차(坐次)에 따라 매일 순산인(巡山人) 2명을 윤정(輪定)한다. 분계(分界)가 광활하면 1인을 더 정한다.

一. 산직(山直)이란 역(役)은 백성들이 가장 괴롭게 여겨 피하는 바이다. 그러나 뇌물을 바치고 면역(免役)함으로써 여러달 동안 한 사람에게 치우치도록 정하는 폐단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계중(契中)으로부터 가호의 좌차에 따라 남정(男丁)의 수를 윤번으로 배정하고 서울에서 경좌(更坐)하는 법과 동일하게 하고 산을 순찰하여 범송자(犯松者)를 관가에 잡아 들이도록 하고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처결 한다.

一. 각 동리의 분계는 종전의 동리분계를 따라 시행하고 각 리·동이 금벌의 제한(界限)을 분장(分掌)토록 한다.

一. 사부가(士夫家)의 산소금양처(山所禁養處)와 각가의 묘노(墓奴)와 권찰(權察)의 묘호(墓戶)도 또한 모두 계중(契中)에 포함시킨다.

一. 양반 묘소의 소나무는 비록 본주(本主)가 마음대로 작벌(斫伐)하더라도 범금(犯禁)으로써 논죄(論罪)한다.

一. 산택(山澤)은 본주에게 일임하고 가꾸어 작벌하는 것과 종전의 사양(私養)은 모두 각 리(里)의 금송계의 분계중(分界中)에 포함시키고 1년초(草)외에는 절대엄금하여 산이 벌거숭이가 되게 작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一. 사찰(寺刹)의 소재처도 또한 한계를 정하고 그 절의 중으로 하여금 자기 임무를 정

하여 금벌(禁伐)하되 모든 것을 동리의 규법(規法)에 의하도록 한다.

一. 각 리에서 소사(召史=과부)·병인(病人)을 제외한 모든 가호는 좌차에 따라 계안(契案)을 수정(修定)하고 관에서 반포한 절목을 베긴 다음 그달 그믐안에 관에 바치도록 하여 이명(里名)위에 도장을 찍게 한다.

一. 대송·중송·소송을 자른 자에 대한 처벌규칙이 법률에 진실로 지극히 엄하게 정해 있는데도 지금 촌민들은 마치 풀쭈기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베고 있다. 그러니 송충(松蟲)의 재해(災害)뿐만 아니라 도끼가 날마다 찾아 들고 있으니 그 피해가 더욱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처벌규칙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한다.

一. 심어 놓은 어린 소나무를 베 자에 대해서는 가지(枝) 한개에 태(苔) 10도(度), 6구루 이상이면 상사에게 보고(報告)하고 처죄 한다.

一. 자연생인 어린 소나무를 베 자에 대해서는 1구루에 태 50도, 2구루 이상이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죄 한다.

一. 심어 놓은 작은 소나무를 베 자에 대해서는 1구루에 태 50도, 2구루 이상이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죄 한다.

一. 자연생인 작은 소나무를 베 자에 대해서는 1구루 일지라도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죄 한다.

一. 중송·대송은 생목(生木)과 고목(古木)을 막론하고 1구루를 베 자는 엄하게 가두고 상사에게 보고하며 소나무의 가지를 꺾은 자는 한 짐마다 태 20도, 석질 이상이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죄 한다.

一. 편리(編籬)·보교(補橋)·방천(防川)에 소

나무의 가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소나무를 베 자로서 논죄 한다.

一. 타계(他契)에서 경계를 넘어 와서 벤자는 본동(本洞) 사람이 모를 이치가 없다. 발견에 따라 잡아 오게 하여 다스리는 한편 벤자가 사는 마을의 담당자도 아울러 죄를 다스린다.

一. 주년(周年)내에 경계안의 종송(種松)이 많이 자라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계의 도유사(都有司)를 중하게 논죄 한다.

一. 도유사가 교체될 때에는 신임 유사(有司)와 같이 산을 다니며 송근(松根)의 유무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서로 수기(手記)를 교부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一. 금송(禁松)의 정령(政令)은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관가에서 소임(所任)을 별정(別定)하여 금벌(禁伐)케 한다면 반드시 관권을 빙자하고 마음대로 구집(拘執)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혜택이 미치지 전에 환해(患害)의 폐단이 먼저 생기게 되므로 지금 각 리·동으로 하여금 계를 조직하게 하는 취지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각계의 소임에게 이러한 뜻을 알려서 성심껏 거행하도록 한다.

一. 무릇 금령은 마땅히 금령이 발효되기 이전과 이후의 일을 분간하여 시행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절목이 반포된 이후에 금령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발견에 따라 처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임의 무리가 만약 혹 금령이 발효되기 이전의 일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공갈·위협하고 주식(酒食)을 빼앗아 먹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중

물(重律)로써 처단 해야한다. 이와 같은 일을 명심해서 거행해야 한다.

一. 아무리 궁촌(窮村)·벽리(僻里)·심산(深山)·절벽(絶壁)이라 하여도 관에서 직접 조사하되 혹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붙잡거나 혹 솔뿌리에 벤 흔적이 있거나 혹 솔가지를 끌어 가거나 하면 발견에 따라 원범(元犯)은 마땅히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거나와 해당 마을의 유사(有司)와 해당 산직(山直)도 함께 처벌한다.

「禁松作契節目」이 收錄되어 있는 臨官政要의 著者 安鼎福의 號는 順庵, 橡軒등이며 本貫은 廣州이다. 肅宗 38年(1712) 12月 25日에 忠北 堤川에서 出生했다. 10歲때에 私塾에 入學했고 26歲때에 이미 性理大全, 心經을 읽고 性理學에 뜻을 두었다. 35歲때에 星湖 李瀼을 京畿 安山에서 만나 師事했다. 여러차례 官職에 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오로지 學問에만 專念했다. 80歲때 (1791)의 7月에 棄世하였다.

著書로는 臨官政要, 東史綱目, 星湖僿說類編, 順庵集, 橡軒隨筆등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아직 묻혀있는 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서울대 教授·理博>

「표지설명」

天然記念物 219號 寧越 高氏窟

過去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은 洞窟은 지금은 以北에 屬하고 있어 찾아 볼 수 없게 된 平安北道 寧邊의 棘龍窟이다. 그러나 1965年 以來 南韓에서도 많은 洞窟의 所在와 規模가 차차 밝혀지기 始作하여 지금까지 전혀 그 内部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던 大石灰洞에 자리잡고 있는 幻仙窟, 觀音窟, 垂直窟 等の 探查結果가 報告되었고, 한편 文

化財管理局에서는 洞窟資源의 全貌를 밝히어 그중 重要한 洞窟을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護하기에 이르렀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50여개소의 熔岩洞窟과 100여개소의 石灰洞窟이 알려져 있는데 熔岩洞窟은 濟州道 一帶에서만 發見되고 있다.

濟州道の 洞窟은 特히 2層 또는 3層으로 形成된 것이 많다는 것이 特徵이며 그 規模에 있어서도 巨大한 것이 많아서 世界 最長의 熔岩窟로 알려진 金寧里의 萬丈窟은 그 총연장이 무려 6,978m에 이르고, 이 以外에도 朝天面의 와홀굴이 1,268m, 성산면의 미천굴이 1,600m, 翰林邑의 소천굴은 2,087m에 달한다.

石灰洞窟은 効果的인 觀光資源으로서 世界的으로 有用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現在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5個所를 비롯한 여러 石灰洞窟들이 훌륭한 觀光資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중 寧越의 高氏窟은 蔚珍의 聖留窟과 함께 特히 잘 알려진 곳으로 寧越邑에서 南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강물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산이 나란히 뻗어 있는데 서편산 기슭, 70도 가량의 경사지를 30m 가량 오르면 이窟의 入口가 나타난다. 入口는 높이 7m에 폭 4m, 主窟의 길이는 1.8km이나 이리저리 엿혀 있는 支窟의 길이를 합하면 총연장 3km에 達하며 高氏窟이라는 이름은 壬辰倭亂때 그 近處에 살고 있던 高氏 一家가 이窟에 피난했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洞窟 入口에서 시작하여 窟全體에 물기가 번져 있어 천정과 바닥 그리고 兩壁이 모두 寶石을 뿌려놓은듯 찬란한 빛을 發하고 있으며 鐘乳石, 石筍, 돌폭포, 洞窟眞珠들이 調和를 이루어 絶景을 이루고 있다.

題字는 成均館大學校 教授 閔泰植 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李 德 鳳

편집인 金 昌 煥

발행처 社團 韓國自然保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洞山 1

林業試驗場內 ☎ 2894

등록번호 다-576호 등록일자 1975. 8. 26

<非 賣 品>